

# 제9차 IATTC-WCPFC 참다랑어 공동작업반 회의 및 제20차 WCPFC 북방위원회 참석 결과

## □ 개요

- (개최목적) 태평양 참다랑어(PBF) 보존관리조치 논의를 위한 전미열대 참치위원회(IATTC)와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(WCPFC) 북방위원회(NC) 공동작업반 회의 및 후속 NC 회의
- (일시/장소) '24.7.10(수)~7.16(화)\* 09:00~17:00(한국시간) / 일본 북해도  
\* 제9차 IATTC-WCPFC 공동작업반: 7.10(수)~7.13(토), 제20차 WCPFC NC: 7.15(월)~7.16(화)
- (참석자) 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, 미국 등 IATTC 및 WCPFC 회원  
\* (한국대표단) 해수부 국총과, 수과원, 수품원, 대형선망수협, 협력센터
- (주요의제)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평가 결과 보고, 보존관리조치 개정, 어획증명제도 수립 등

## □ 주요내용

### 1. 어획증명제도

- 재정 및 행정사항
  - 기술작업반은 태평양 참다랑어 전자적 어획증명제도(ePBCD) 시스템 개발 및 정비 작업에 관한 IATTC와 WCPFC 사무국 역할 분담에 대해 양 기구 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음
  - ePBCD 시스템 개발 방식에 대해, ① 양 기구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과 ② 양 기구가 각각 시스템을 개발하지만 조화시키는 방식이 제시되었고, 이에 대해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함

## ○ 보존관리조치 초안 주요 요소

| 요소     | 논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용 범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제거래되는 어류를 대상을 하고, 범위 확대는 단계별 접근을 취하기로 함</li> <li>· ICCAT과 같이 어류 머리, 눈, 아가미, 내장, 꼬리는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 |
| 선박 등록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참다랑어 목표 어선 및 축양장은 등록 필요</li> <li>· 비목표 어선의 등록 여부는 향후 계속 논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보 보고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박, 어획, 거래, 케이징, 수확, 전매에 관한 정보는 포함</li> <li>· 이전(transfer)은 태평양에서의 관행을 고려하여 향후 계속 논의</li> </ul>         |
| 태깅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태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</li> <li>· 태깅할 경우 정부 인증 요구사항 면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증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부 당국 또는 권한이 위임된 기관이 수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검증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ICCAT과 같이, 어획, 축양, 수출 정보에 관한 인증은 동 활동 수행 회원이, 검증은 수입하는 회원이 수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데이터 검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의 자동적인 검증 기능을 포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회원별 이행 보고서 검토

### ○ 스포츠 어업

- 미국은 일본에 스포츠 어업 감시 방법을 질문하였고,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주요 항구들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, 스포츠 어업을 위해 40톤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답변
- 일본은 미국 스포츠 어업의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, 미국의 추가적인 관리조치 고려를 촉구하였음
- 미국은 자국 스포츠 어선들의 일일 최대 어획 미수를 10미에서 2미로 감축하였음에도 어획량이 증가한 원인은 어류의 체중 증가 및 항차수 증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, 과거 자원상태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이 어업의 어획량은 자원풍도와 항상 비례해 왔고, 자국 스포츠 어업 어획량은 ISC 자원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, 동부 해역에서 미국만이 스포츠 어획량을 보고하고 있음을 상기

○ 기타

- 뉴질랜드와 호주는 자국 해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 증가로 자국 연승 어업에서 참다랑어 혼획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
- 일본은 한국의 어획노력 통계에서 정치망 허가 수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고, 한국은 어획노력 제한이 정치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

### 3. 장기 수확 전략 개발

○ 관리전략평가(MSE) 경과

- ISC 작업반 의장은 MSE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 
(’25년: MSE 결과 도출, ’26년: 수확 전략에 의한 TAC 적용)
- ISC 작업반 의장은 수확 전략으로 도출될 TAC를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을 희망하는지와 현재 양 해역 내 치어 성어 할당비율 변경 작업을 희망하는지를 공동작업반에 문의하였음
- 공동작업반은 현재의 TAC 구분(해역, 체장)과 치어 성어 할당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음

### 4.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

○ 회원국 제안 및 의견(초기입장)

| 구분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본 | 1) 자원상태는 현격히 개선되었고(자원회복 목표 조기 달성), 산란자원량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<br>2)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상태 개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, 일본 어민들의 조업상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심화되고 있음<br>3) 일본 어획한도 증가 제안 : (치어) 4,007톤 → 5,209톤, (성어) 5,614톤 → 12,968톤<br>4) 미소진 어획한도 이월 허용 비율 : (기준) 5% → (제안) 17% |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멕시코</b> | 1) 동서부 해역 간 치어 어획 비중이 상이한 바, 양호한 자원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0세 어류 어획 최소화 필요<br>2) 시장과 업계가 공급량 증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급격한 어획한도 증가가 아닌, 단계별 접근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한국</b>  | 1) 한국은 과거 자원상태 악화에 기여한 책임이 적음에도 자원회복을 위해 상당한 어획량 감축을 수용했음<br>2) 지난 10년간 한국 해역 내 회유량이 증가했음에도 자원회복을 위해 연안국 권리 행사를 자제했고 '21년의 불공정한 할당도 수용했음<br>3) 할당은 역사적 어획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, 연안국 권리, 자원 분포 등 제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<br>4) 한국 성어 어획한도 증가 제안 : 30톤 → 515톤<br>5) 치어 → 성어 변환계수 사용 한도 폐지<br>6) 조치 내 어획한도 제한 규정은 자국 해역 내에서 어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안국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을 명시하는 조항 추가 |
| <b>피지</b>  | 한국의 연안국 권리 조항 제안은 소도 개발도상국(SIDS)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미국</b>  | 1) 어획한도 증가 : [멕시코] (2년간): 6,556톤 → 8,970톤, [미국] (2년간): 739톤 → 3,015톤, [일본] (성어) 5,614톤 → 8,421톤, [한국] (성어) 30톤 → 45톤, [대만] (성어) 1,965톤 → 2,948톤<br>2) 치어(30kg 미만) 어획한도는 유지<br>3) 미소진 어획한도 이월 허용 비율 5%로 유지<br>4) 치어 → 성어 변환계수 규정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○ 합의 내용

- (전체 한도) ① 서부 해역 치어 어획한도 10% 및 성어 어획한도 50% 증가, 동부 해역 어획한도 50% 증가 ② 치어 어획한도 증가는 0세 어류(2kg 미만) 어획 방지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\*

### \* 일본의 서면 약속

- 1) 수산청은 (혼획을 제외하고) 자국 선망선들의 0세 어류 양륙을 금지할 것
- 2) 수산청은 0세 어류 어획 증가 방지를 위해 관련 지방 정부들과 협의할 것
- 3) 수산청은 치어 한도 증가가 0세 어류 어획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

- (회원별 한도)

| 구분        |     | 기존               | 변경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태평양<br>서부 | 일본  | 치어 : 4,007톤      | 치어 : 4,407톤        |
|           |     | 성어 : 5,614톤      | 성어 : 8,421톤        |
|           | 한국  | 치어 : 718톤        | 치어 : 718톤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| 성어 : 30톤         | 성어 : 501톤          |
|           | 대만  | 성어 : 1,965톤      | 성어 : 2,947톤        |
| 태평양<br>동부 | 미국  | '23-'24년: 1,017톤 | '25-'26년 : 1,822톤  |
|           |     | 1년 최대 : 720톤     | 1년 최대 : 1,285톤     |
|           | 멕시코 | '23-'24년: 6,973톤 | '25-'26년 : 10,763톤 |
|           |     | 1년 최대 : 4,068톤   | 1년 최대 : 6,296톤     |

\* 공동작업반은 한국 성어 한도와 동부 회원국 한도를 추가로 300톤씩 증가시키고, 한국 치어 한도 증가분 71톤을 성어 한도로 변환하여 합산하기로 합의하였음

- (한도 조정) 이월 비율을 5%→17%로 개정, 변환계수 사용 한도 삭제
- (스포츠 어업) 스포츠 어획량을 상업적 어업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
- (기타 한도) 뉴질랜드에게 200톤, 호주에게 400톤 한도 각각 부여\*

\* 미야하라 공동의장은 북방위원회 설립 역사를 상기시키며 북방위원회 조치가 남반구 회원들의 정당한 조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함

## 5. 기타

### ○ 차기 공동의장 선출

- IATTC 측 공동의장 Dorothy Lowman(미국)은 사임하고 WCPFC 측 Miyahara Masanori(일본)는 연임
- 차기 IATTC 측 공동의장은 IATTC 연례회의(8월)에서 결정